

2018년도 통계청 연구용역

# 제 안 요 청 서

과 제 명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발주기관	통 계 청

2018년 3월

담 당	관련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통계기준과	최경순 사무관	042-481-2566	042-481-2180
		양동혁 주무관	042-481-2529	

# 목 차

I . 일반사항 .....	1
1. 사업 개요 .....	1
2. 추진배경 .....	1
3. 사업 목적 .....	2
4. 과제 관리 및 평가 .....	2
II . 제안요청 사항 .....	3
1. 연구 범위 .....	3
2. 연구 내용 .....	5
3. 기타 수행 사항 .....	5
4. 주요 산출물 .....	6
5. 추진 일정(안) .....	6
III . 기타 행정사항 .....	7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7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10
3. 기타 세부 사항 .....	11

## [서식]

1. 제안서 평가기준 .....	15
2. 과제제안서 표시서식 및 작성방법 요약 .....	16
3. 과제수행계획서 서식 .....	18

# I. 일반 사항

## 1. 사업 개요

- (과제명)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 사망 야기 행위(01), 사가기만부패 행위(07), 공공질서·권위·국가규범 위반 행위(08)에 대한 범죄통계 시산, 분석 및 범죄분류체계(안) 도출
-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 (예산) 50,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000-1031-301-260-01(통계기준 및 품질관리 연구용역비)
- (추진방법) 연구범위, 내용, 산출물 등을 정하고 전문기관(가)을 선정하여 연구를 위탁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받는 연구용역 방식
  - 범죄통계 관련부처의 의견반영, 전문성 및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개발연구 T/F의 자문 및 토론 병행
- (결과활용) 국제비교의 핵심 대상인 살인 통계 등을 우선 분석함으로써 추후 다른 유형 분석에 벤치마크로 활용

## 2. 추진 배경

- 국제기구의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채택( '15.3.) 및 이행권고에 따른 한국범죄분류 개발 의무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 3. 사업 목적

- 2017년의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ICCS 도입 타당성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쟁점을 범죄유형(ICCS 대분류)별로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분류체계를 구축
  - 범죄유형별 쟁점 해결을 위해 해당 범죄 분야 전문성과 범죄통계 자료 접근성을 갖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대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 4. 과제 관리 및 평가

#### 1) 과제담당관 지정

- 용역과제 기본계획 수립,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
-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 상황 공개
- 정책연구의 활용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연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 등

#### 2) 소위원회 구성

- 용역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등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4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 통계정책국장(위원장), 통계기준과장 및 용역과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2명이상으로 구성

## II. 제안 요청 사항

### 1. 연구 범위

- 국제범죄분류(ICCS) 대분류 01, 07, 08에 대한 한국형 분류체계 도출

#### < 2018년도 연구 대상 분류 >

대분류: 3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52개	세분류: 58개	
01 사망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의도로 한 행위	0101 고의 살인	01010 고의 살인	010100 고의 살인	
	0102 고의 살인 미수	01020 고의 살인 미수	010200 고의 살인 미수	
	0103 비고의 살인	01031 비과실 살인 01032 과실 살인	010310 비과실 살인	010321 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
				010322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과실 살인
	0104 자살 방조.교사	01041 자살 방조 01049 기타 자살 방조.교사	010410 자살 방조 010490 기타 자살 방조.교사	
	0105 안락사	01050 안락사	010500 안락사	
	0106 불법 낙태	01060 불법 낙태	010600 불법 낙태	
	0107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70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700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9 기타 사망 야기 또는 의도 행위	01090 기타 사망 야기 또는 의도 행위	010900 기타 사망 야기 또는 의도 행위	
07 사기, 기만, 부패 관련 행위	0701 사기	07011 금융 사기	070111 국가에 대한 금융 사기 070112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 사기	
		07019 기타 사기	070190 기타 사기	
		0702 위조	07021 지불수단 위조	070211 현금 지불수단 위조 070212 비현금 지불수단 위조
	07022 상품 위조		070220 상품 위조	
	07023 문서 위조		070230 문서 위조	
	07029 기타 위조		070290 기타 위조	
	0703 부패		07031 뇌물 수수	070311 능동적 뇌물 수수 070312 수동적 뇌물 수수
		07032 횡령		070320 횡령
		07033 권한 남용	070330 권한 남용	
		07034 영향력 거래	070340 영향력 거래	
		07035 불법 축재	070350 불법 축재	
		07039 기타 부패	070390 기타 부패	
		0704 범죄수익 관련 행위	07041 돈 세탁	070410 돈 세탁
	07042 문화재 불법 매매		070420 문화재 불법 매매	
	07049 기타 범죄수익 관련 행위		070490 기타 범죄수익 관련 행위	

대분류: 3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52개		세분류: 58개	
08	공공질서, 권위, 국가규범 위반 행위	0801	공공 행동규범 위반 행위	08011	폭력적 공공 무질서 범죄	080110	폭력적 공공 무질서 범죄
				08012	사회·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관련 행위	080120	사회·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관련 행위
				08019	기타 공공규범 위반 행위	080190	기타 공공규범 위반 행위
	0802	공공 성규범 위반 행위	08021	성매매	080210	성매매	
			08022	외설물	080220	외설물	
			08029	기타 공공 성규범 위반 행위	080290	기타 공공 성규범 위반 행위	
	0803	표현의 자유 관련 행위	08031	표현의 자유 위반 행위	080310	표현의 자유 위반 행위	
			08032	사회적 신념 및 규범 표현 관련 행위	080321	종교적 신념/견해 관련 규범 위반	
					080322	편협 및 증오 선동 관련 규범 위반	
			080329	기타 사회적 신념 및 규범 표현 관련 행위	080329	기타 사회적 신념 및 규범 표현 관련 행위	
	08039	기타 표현의 자유 또는 제한 관련 행위	080390	기타 표현의 자유 또는 제한 관련 행위			
	0804	공금이나 비축금 위반 행위	08041	국고 수익 위반 행위	080410	국고 수익 위반 행위	
			08042	상업이나 금융 규제 위반 행위	080420	상업이나 금융 규제 위반 행위	
			08043	도박 규제 위반 행위	080430	도박 규제 위반 행위	
			08044	상품 밀수	080440	상품 밀수	
			08045	시장 조작 또는 내부 거래	080450	시장 조작 또는 내부 거래	
			08049	기타 공금 또는 비축금 관련 위반	080490	기타 공금 또는 비축금 관련 위반	
	0805	이민 관련 행위	08051	밀입국	080510	밀입국	
			08059	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	080590	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	
	0806	사법체계 위반 행위	08061	재판 방해	080610	재판 방해	
			08062	사법 집행 방해	080620	사법 집행 방해	
			08063	범죄 의도	080630	범죄 의도	
			08064	음모	080640	음모	
			08069	기타 사법체계 위반 행위	080690	기타 사법체계 위반 행위	
	0807	민주선거 관련 행위	08071	과도한 유세 행위	080710	과도한 유세 행위	
			08079	기타 민주선거 관련 행위	080790	기타 민주선거 관련 행위	
	0808	노동법 위반 행위	08081	집합 노동법 위반 행위	080810	집합 노동법 위반 행위	
			08082	개별 노동법 위반 행위	080820	개별 노동법 위반 행위	
	0809	기타 공공 질서, 권위 및 국가규범 위반	08090	기타 공공 질서, 권위 및 국가규범 위반	080900	기타 공공 질서, 권위 및 국가규범 위반	

## 2. 연구 내용

- 위의 연구대상 분류에 대한 죄명코드 연계표 확정
- 범죄통계 시산 및 분석, 쟁점별 해결 방안 및 분류체계(안) 도출
  - 최하위분류(세분류) 단위에서 한국 범죄통계 작성대상 죄명(코드)와 연계하여 국제범죄분류 기준의 범죄통계를 시산하고, 연계표는 별도의 엑셀 파일로 제공
  - 시산 과정에서의 문제점, 시산 결과 예상되는 사회적 쟁점 등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대분류에 대한 한국범죄분류 체계 초안 도출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항목별 해설서(안) 작성
  - 도출된 분류체계의 각 분류별 해설, 용어정의, 포함·제외 사례 등 상세정보 수록
- 기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 3. 기타 수행 사항

- (진행상황 보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매월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실시
  - 단,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가 개최되는 월에는 진행상황 점검회의 생략 가능
  - 연구진 전원은 모든 진행상황 점검회의에 필히 참석하여 연구 중 발생하는 쟁점과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방안, 지침 등을 공유
- (보고서 보완) 최종보고서(안)에 평가결과 및 발주처의 수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
- (세미나 참여) 연구결과 공유와 토론을 위해 개최되는 세미나에 세션을 구성하고 연구결과를 발표

#### 4. 주요 산출물

- 구체적 제출 일정, 수량, 양식 등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 모든 보고서는 공공부문 종사자, 관련 분야 전문가 외에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명료하게 기술

산출물	수록내용	수량(방법)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내용에 근거한 연구 계획	1부(e-mail)	계약 후 1주 내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회 결과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수정본	각1부(e-mail)	착수보고 후 1주 내
중간보고서	- 연구결과 중간보고	10부(인쇄물)	계약 후 3개월 내
최종보고서(안)	- 최종보고서 초안	1부(e-mail)	계약완료 1개월 전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평가 의견 및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1부(e-mail)+ 20부(책자)	계약완료 2주 전
기타 산출물	- 연계표(엑셀) - 통계표, 분석자료, 수집자료 등	1부(e-mail)	계약완료 후 2주 내

#### 5. 추진 일정(안)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 2018년도 한국범죄분류 개발 연구 세부 추진 일정 >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수행(6개월)											
- 사업수행계획서 접수(계약후 1주내)											
- 착수보고회											
- 중간 보고/평가											
- 최종보고서(안) 접수(완료 1월전)											
- 최종 보고/평가											
- 최종보고서 접수(완료 2주전)											
- 진행상황 점검회의											
• 사후 보완											
- 보고서 검토·보완											
- 세미나 개최											



### Ⅲ. 기타 행정사항

####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 및 공개경쟁에 의해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적용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 제안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경쟁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정책과 통계, 범죄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과제관련 연구 경험을 갖춘 전문가 그룹 또는 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자 간 제한경쟁입찰임(단,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참가 허용)
  - (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기타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나.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기준’ 적용(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가격 종합평가결과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결과 동일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에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

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평가절차
  - 제안자의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실시
  -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자 점수 계산

#### 다. 기술평가 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서식 1] 참조

#### 라. 평가점수 산출방법

- 기술평가 점수 산출방법
  - (각 평가위원의 점수산출)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소수점 이하 3 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합산
  -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기술능력평가 결과 68점(총 80점의 85%)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가격평가 실시

- 배점 : 20점
- 평가근거 및 평점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 가. 제안서의 작성방법

- 제안자는 통계청이 제시한 제안 요청서를 참고하여 『통계청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양식[서식 2]』에 따라 연구 방법 및 과제 수행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제안자는 본 제안 요청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사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
- 제안서에는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연구 수행실적, 연구논문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첨부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나.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일시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 및 CD 2매
-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제본하여 제출함

## 다. 제안 설명회

-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참여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 : 40분 이내
  - 제안 설명 20분 이내, 질의 및 답변 20분
- 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사업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혹은 설명회에서 추가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됨
- 설명회 관련 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함

## 라.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3. 기타 세부사항

### 가. 보고 사항

- 연구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역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구분	보고 내용	시기	방법
착수보고회 개최	- 과제수행계획서 (서식3)	계약 후 1주 내	대면보고
중간보고회 개최	- 연구결과 중간보고서	계약 후 3개월 내	대면보고
최종보고회 개최	- 연구결과 최종보고서(안)	계약완료 1개월 전	대면보고
진행상황점검회의 개최	- 진행상황 보고	매월(착수, 중간, 최종 보고 실시월 제외)	대면보고

## 나. 비밀 및 보안

- 연구용역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용역기관의 용역수행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함
-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주관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공개할 수 없음
-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하거나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다. 사업 수행 지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조사 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편집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함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세미나, 학회 등에 연구자 단독 또는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로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는 행정자치부 정책연구용역 국민 집단지성 활용방안에 따라 국민생각함\* 등의 사이트에 일반 국민이 등록한 아이디어를 조회·검토·선별하고, 분석·발전시켜 연구 수행에 반영하고, 산출내역서에 마련된 항목에 근거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

\*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rk>) > 생각함 특별관 > 정책연구

\*\* 대가 지급기준은 계약예규(기재부)에 따라 자문료, 평가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고려하고 연구용역 규모·내용·반영비율 따라 자체적으로 책정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은 공동으로 소유 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2494호, 2015.10.14.)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국가연구사업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서식 1>

##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대상 연구기관 : \_\_\_\_\_

대항목 (배점 한도)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일반사항	과제 이해도	◦ 과제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	5	
	제안기관 수행능력	◦ 과제수행관련 기술보유 수준 ◦ 사업수행조직의 적정성 ◦ 제안 연구기관의 사업 분야와 본 과제의 관련성 정도 등	15	
연구방향 및 내용	연구방향	◦ 과제 해결방향의 적정성	10	
	연구내용	◦ 연구방향에 따른 해결 방안 및 내용의 적합성 ◦ 제안요청사항의 요구 충족도 ◦ 연구방향에 따른 해결 방법론의 적합성 ◦ 적용이론의 적정성 ◦ 최종목표 달성 가능성 등	30	
	수행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정성	◦ 연구조직 인력구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원 업무분장의 적정성	25	
	일정관리의 적정성	◦ 과제수행절차의 적정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등	5	
기타사항	기타사항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보안관리, 기밀보장에 대한 확신성 등	5	
추가제안	추가제안사항	◦ 연구 추진 시에 반영함으로써 과제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제안	5	
<b>합 계</b>			100	

2018년      월      일

(평가) 평가위원 : \_\_\_\_\_ (서명)

(확인) 위 원 장 : \_\_\_\_\_ (서명)

<서식 2>

## 과제제안서 표시서식 및 작성방법 요약

※접수번호			※관리번호	
-------	--	--	-------	--

# 2018년도 통계청 정책연구용역 과 제 제 안 서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진구성 (연구책임자포함)	책임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계	
	명	명	명	

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 소속기관장 (직인)

통계청장 귀 하

## 제안서 작성방법 요약(예시)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고
<표지>	· <서식2호>를 활용하여 표지를 작성한다.	
I. 과제 개요	· 표지 외에는 참여연구원의 실명이 기입되지 않아야 한다.	
II. 제안 연구기관 현황	· 과제 개요와 연구방향 또는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다.	
1. 일반현황	· 제안연구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개인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력사항)	
2. 주요 연구 분야	· 제안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 분야를 기술한다. (개인일 경우 전공 및 연구 분야를 기술)	
III. 제안 내용		
1. 제안개요	·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연구방향 및 내용	· 과제의 연구방향과 연구내용을 기술한다.	
3.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참여 연구원 규모 및 각 연구원별 업무분장 내용을 기술한다.(연구원 실명기입 금지 : 갑, 을 등으로 기입)	
4. 연구기간(추진일정)	· 연구내용별 세부 추진일정과 진척율을 기술한다.	
5. 기타사항	· 해당 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특별히 제안할 사항, 기타 행정사항, 또는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서식 3>

과제수행계획서 서식(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접수년월일			※관리번호	
--------	--	--	-------	--

2018년도 통계청 정책연구용역  
과제수행계획서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진구성 (연구책임자포함)	책임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계	
	명	명	명	
<p>상기 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하여 그 결과를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p> <p style="text-align: right;">○○○ 소속기관장 (직인)</p> <p>통계청장 귀 하</p>				

# < 과 제 명 >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만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 I. 연구개요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만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또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제안서 및 제안발표회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연구목적
2. 필요성
3. (기타 추가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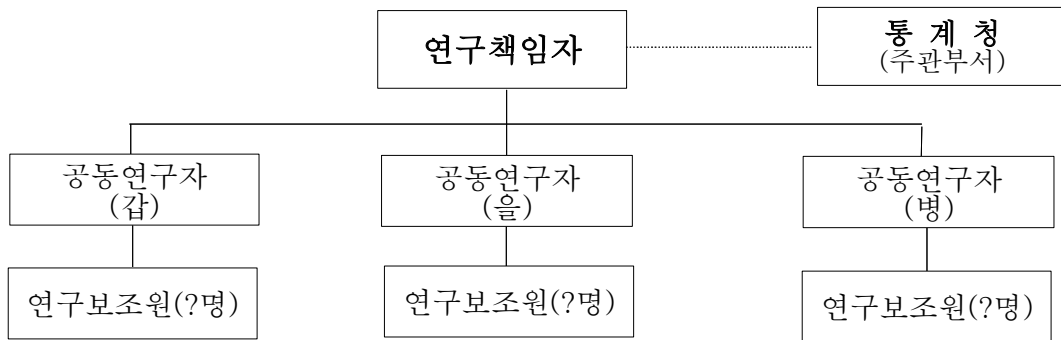
##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2. 과제 접근방법
3.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4. 연구결과의 학문적 또는 통계발전에 미치는 효과
5.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 ① 학·관의 연계 또는 협력에 관한 사항
  - ② 국내·외 연구동향
  - ③ 기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 III. 과제수행계획

####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가. 수행조직



☞ 제안서 및 제안발표회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참여 연구원의 축소는 불가 하지만, 계약금액의 대폭적인 감액으로 인한 경우는 협의 조정 가능함

##### 나. 연구원별 업무분장표

구 분	소속	성명	역 할 분 담 내 용	참여율(%)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자			○ ○	
공동연구자			○ ○	
연구보조원			○ ○	

※ 연구용역 참여 연구진들의 참여율 관리를 위해 필히 작성

## 참여자 서약서

소 속	000 대학교 산학협력단				
성 명	홍길동	총 참여율		00.0%	
발주기관명	사업명	참여구분	참여율	용역 참여기간	
				참여일	종료일
통계청	0 0 0	책임연구원	25.0%	2018.1.1	2018.6.30.
000 부 (타 기관)	0 0 0 0 0	연구원	12.5%	2018.4.5.	2018.9.30.
000 청 (타 기관)	0 0 0 0 0	책임연구원	12.5%	2018.6.1.	2018.11.30.
		}			
		}			
합계			00.0%		

\* 통계청(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 중에 참여하게 되는 타 사업을 모두 기재

본인은 본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모든 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 000 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 : 홍길동        (서명)

## 2. 추진일정

가. 소요기간 :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월)

### 나. 세부추진일정

연구 내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추진진도(%)													

## 3. 사전연구 결과 (있는 경우)

## 4. 연구 기대효과

## 5. 추가 사항

☞ 제안요청서에는 없으나 본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깊어 함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시킨 사항